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학 교 용 지 확 보 등 에 관 한 특 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은 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승인권자가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방법 등)

법 제3조2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세대 수, 준공시기 등을 포함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의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2조(오피스텔의 범위)</u> <u>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의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u>
<신설>	<u>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방법 등)</u> <u>법 제3조2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세대 수, 준공시기 등을 포함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의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